



0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의무사항인가요?

일괄제공을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게 성실신고를 지원해주고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청가능하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02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신청해야 하나요?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간소화자료 조회 및 개별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속 근로자 전체가 아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것을 희망하는 근로자만 신청하면 됩니다.

03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과 별도로 홈택스에서 또 한번 확인을 하는 이유는?

다양한 민감정보가 포함된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시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근로자가 신청 내역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확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04 일괄제공되는 자료에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수단을 통하여 부양가족 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 합니다.

* 일괄자료 제공일 이전(1.19.)까지 부양가족 자료 제공에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

기존에 자료제공 사전 동의한 경우 일괄제공을 위해 별도로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05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파일은 어떠한 형태로 받는 건가요?

근로자는 물론 여러가지 연말정산 유형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회사도 혼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이 PDF파일을 내려받는 것과 동일한 형태의 인별 PDF파일을 회사에 제공하고, 파일 용량이 클 경우에는 인별 PDF파일을 분할 압축(약 5GB)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예 A01, A02, A03, A04,)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성실신고를 지원해주고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의무사항이 아닌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절차 흐름도

구분	일괄제공 절차	일정
1단계 (근로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서 제출	'21.10.29. ~ '22.1.14.
2단계 (회 사)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 명단을 취합하여 홈택스에 등록	
3단계 (근로자)	신청서 제출과 별도로 본인의 간소화자료가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을 확인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공동·금융·간편인증, 생체인증)하여 확인 절차를 진행, 확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되지 않음 -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 사전 삭제	'21.12.1. ~ '22.1.19.
4단계 (국세청)	일괄제공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 구축	
5단계 (회 사)	간소화자료 PDF파일을 내려받아 연말정산 진행	'22.1.21. ~ '22.3.10.
6단계 (회 사)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연말정산 최종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	

전화상담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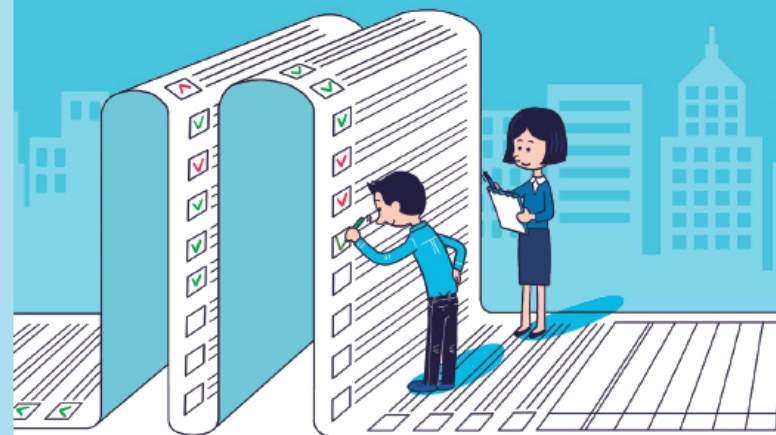
☎ (국번 없이) 126 → ① → 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대한민국 대정환
한국판뉴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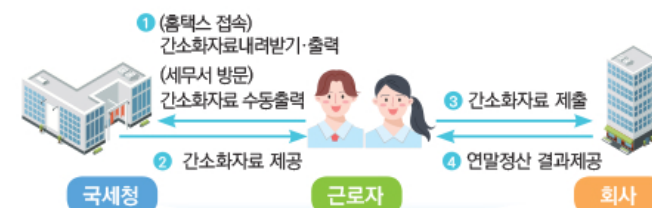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합니다.
더욱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하세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효과

회사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 등을 활용하여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제출

근로자 간소화자료에 추가·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세액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신청 절차



일괄제공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근로자 -



근로자 명단 등록 및 유의사항 - 회사 -



개인정보 보호방안



~'22.1.14. ~'22.1.14. ~'21.12.1. ~ 1.19. 22.1.21~3.10.



1 신청서 제출 2 명단 등록 3 근로자 확인 4 일괄 제공

근로자 → 회사	회사 → 국세청	근로자 → 국세청	국세청 → 회사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 제출	일괄제공 명단 등록	일괄제공 신청 내역 확인(동의)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1 「일괄제공 서비스」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신청서를 제출

2 회사는 신청 근로자 명단을 '22.1.14.까지 홈택스를 통하여 등록

3 근로자는 '21.12.1.부터 '22.1.19.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

4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

신청서 제출

-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22.1.14.까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

신청서 서식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연말정산 ▶ 참고자료실

- 일괄제공 서비스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

- 부양가족이 일괄자료 제공일 이전(1.19.)까지 간소화자료 사전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

근로자 확인

- 신청서 제출과 별도로 본인의 간소화자료가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진행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공동·금융·간편인증·생체인증)하여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진행
- 일괄제공 신청을 하였더라도, 확인(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니 제공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확인(동의) 절차 진행

명단 등록

-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 명단을 취합하여 홈택스에 '22.1.14.까지 등록
-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근로자의 명단을 등록
- 홈택스의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 화면에서, 일괄제공 압축파일을 해제할 때 사용할 비밀번호 설정이 가능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없도록 비밀번호(숫자 4자리) 관리에 유의

PDF파일 내려받기

- '22.1.14.까지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하고 근로자 명단을 등록한 회사에, '22.1.19.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역을 확인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
- 일괄제공 신청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으므로,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 화면을 이용하여 확인(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근로자가 기간내(1.19.)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내
- 홈택스에서 인별 PDF 압축파일을 '22.1.21.부터 제공할 예정으로 명단등록 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내려받은 파일의 압축을 해제하여 간소화자료 파일로 이용

개인정보 보호방안

- 개인의 다양한 민감정보가 포함된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

1. 근로자 확인(동의)

신청서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한 후,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여부를 별도 확인

2. 민감정보 배제 제공

-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 이전부터 항목별·기관별로 삭제할 수 있으며, 개통일 이후에는 개별 건별 삭제도 가능
- 근로자가 민감정보로 지정한 정보는 일괄제공 서비스 대상에서 배제한 후 회사에 제공

